



청림세움

www.i-sh.co.kr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 납입인정금액

주택관리번호 : 2023-000357



# 2023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 8. 11.(금)]

## 모집절차 및 일정

※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업무처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CONTENTS

1.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8
2. 임대신청 문의	8
3. 청약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9
4. 공급주택 및 임대가격	14
5. 신청자격	20
6. 입주자선정방법	25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6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29
9. 계약일정 및 구비서류	30
10. 입주지정 기간	31
11. 임대주택 위치 안내	32
12. 유의사항	33
13. 단지 관련 안내사항	36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40
[별표2]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	41

2023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2023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모집방법 안내

- 이번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 단, 인터넷 및 모바일 활용이 불가능한 자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하며, 신청단지별로 지정된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접수인원이 몰려 2시간 이상의 장시간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대상자	접수기간	접수방법
<p><b>&lt; 1순위(구산그린빌(전용40㎡이하), 일반주택)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산그린빌(전용 4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구임대자격을 충족하는 사람</li> <li>- 공통자격과 면적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li> <li>※ 해당 기준은 공고문의 20~24페이지의 5.신청자격 참고</li> </ul> </li> <li>○ 일반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li> <li>- 공통자격과 면적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li> <li>※ 해당 기준은 공고문 20~24페이지의 5.신청자격 참고</li> </ul> </li> </ul>	<p>2023. 8. 21.(월) 10:00 ~ 2023. 8. 24.(목) 17:00</p>	<p>인터넷청약 www.i-sh.co.kr/app</p>
<p><b>&lt; 2순위(일반주택)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24회 미만) 납입한 사람</li> <li>- 공통자격과 면적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li> <li>※ 해당 기준은 공고문 20~24페이지의 5.신청자격 참고</li> </ul>	<p>2023. 8. 22.(화) ~ 2023. 8. 24.(목)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p>	<p>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단지별 지정일에 방문접수 가능</p>
<p><b>&lt; 3순위(일반주택)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li> <li>- 공통자격과 면적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li> <li>※ 해당 기준은 공고문 20~24페이지의 5.신청자격 참고</li> </ul>	<p>2023. 8. 29.(화) 10:00 ~ 17:00 (방문접수는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p>	<p>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및 방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p>
<p>2023. 8. 30.(수) 10:00 ~ 17:00 (방문접수는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p>		

- 1순위 방문접수는 단지별 지정된 일자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일자	대상 단지
2023. 8. 22.(화)	수서1단지SH빌, 가양8단지, 가양9단지, 도봉서광, 도봉서원, 신대방, 흑석청호, 상암월드컵1단지, 염리상록
2023. 8. 23.(수)	방화6단지, 방화9단지, 봉천신봉, 봉천인헌, 신림초원, 시흥목련, 공릉2-6단지, 상계은빛3단지, 온수연립주택, 월계사슴2단지, 월계청백1단지
2023. 8. 24.(목)	거여3, 거여6단지, 마천대성, 신정양천, 신정푸른마을1단지, 신정학마을2, 신트리2단지, 당산 SH VILLE, 신기목련, 양평상록수, 구산그린빌, 신내10단지, 신내9단지

## 유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모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처벌 대상입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3.8.1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일자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금액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등 신청서 오기재,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 선정 등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순위별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1600-3456)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 관련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신청 내역은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될 수 없사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2023.8.11.(금))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되는 청약납입횟수 및 납입금액은 청약 통장에 기재된 금액이 아닙니다. 인정되는 횟수 및 금액은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주택관리번호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영업일(2023.8.14.(월))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아울러, 통장에 기재된 금액과 발급받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상 횟수, 금액이 다른 경우 문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료를 통보만 받기 때문에 상담이 불가합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23-000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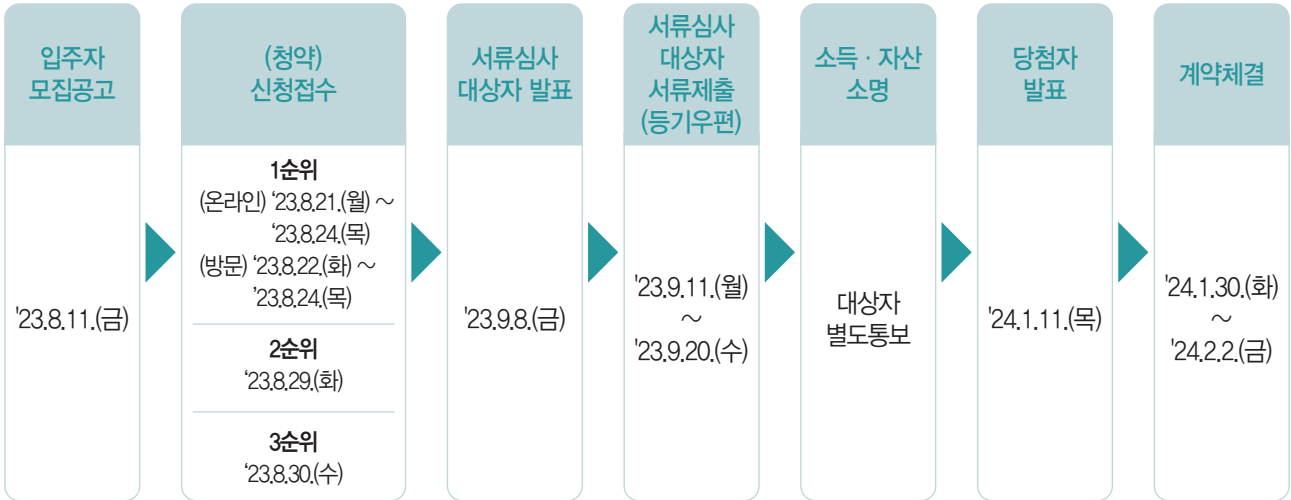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 모든 입주 자격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8.11. (금))**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심사 과정 중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 확정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개정)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를 따르고 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별표1]**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입주 자격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실제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안내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 금회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 14페이지의 4. 공급주택 및 임대가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문에 기재된 임대조건이 아닌,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에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철거민 등 특별공급 신청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단지 공가 발생 시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공가 미발생으로 공급순번 미도래 시 **유효기간 내 공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회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발표일로부터 1년인 2025년 1월 10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예비입주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01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 02 임대신청 문의

- 전화문의: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시~13시)
- 온라인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게시판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청약신청으로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된 사항을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임대주택 단지정보 검색방법(지도기반 주택정보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임대정보 ➔ SH주택정보(새창)



### 03 청약접수 안내 및 유의사항

#### 청약접수 세부일정

대상자	접수기간	접수방법
<p>〈 1순위[구산그린빌(전용40㎡이하), 일반주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산그린빌(전용 40㎡이하)</li> <li>- 영구임대자격을 충족하는 사람</li> <li>- 공통자격과 면적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준은 공고문의 20~24페이지의 5.신청자격 참고</li> </ul> </li> <li>○ 일반주택</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li> <li>- 공통자격과 면적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준은 공고문 20~24페이지의 5.신청자격 참고</li> </ul> </li> </ul>	<p>2023. 8. 21.(월) 10:00 ~ 2023. 8. 24.(목) 17:00</p>	<p>인터넷청약 www.i-sh.co.kr/app</p>
	<p>2023. 8. 22.(화) ~ 2023. 8. 24.(목)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p>	<p>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 단지별 지정일에 방문접수 가능</p>
<p>〈 2순위(일반주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24회 미만) 납입한 사람</li> <li>- 공통자격과 면적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준은 공고문 20~24페이지의 5.신청자격 참고</li> </ul> </li> </ul>	<p>2023. 8. 29.(화) 10:00 ~ 17:00 (방문접수는 점심시간 12:00~13:00제외)</p>	<p>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및 방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p>
<p>〈 3순위(일반주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li> <li>- 공통자격과 면적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준은 공고문 20~24페이지의 5.신청자격 참고</li> </ul> </li> </ul>	<p>2023. 8. 30.(수) 10:00 ~ 17:00 (방문접수는 점심시간 12:00~13:00제외)</p>	

-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인터넷/모바일청약이 불가능한 자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진행하며, 신청단지별로 지정된 일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접수인원이 몰려 2시간 이상의 장시간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접수(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청약접수 가능)를 활용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3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순위 및 2순위 누적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3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2순위 및 3순위 신청가능 단지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시작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청약신청은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오니 본인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해당되는 접수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접수일자에 신청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인터넷청약 첫날 오전 및 마지막 날 오후는 인터넷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안내

- 1순위 방문접수는 단지별 지정된 일자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일자	대상 단지
2023. 8. 22.(화)	수서1단지SH빌, 가양8단지, 가양9단지, 도봉서광, 도봉서원, 신대방, 흑석청호, 상암월드컵1단지, 염리상록
2023. 8. 23.(수)	방화6단지, 방화9단지, 봉천신봉, 봉천인현, 신림초원, 시흥목련, 공릉2-6단지, 상계은빛3단지, 온수연립주택, 월계사슴2단지, 월계청백1단지
2023. 8. 24.(목)	거여3, 거여6단지, 마천대성, 신정양천, 신정푸른마을1단지, 신정학마을2, 신트리2단지, 당산 SH VILLE, 신기목련, 양평상록수, 구산그린빌, 신내10단지, 신내9단지

- 대리인 방문접수 시 지참 서류 안내

□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해야함

-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운전면허증에 한함

구비서류

- ① 신청자 신분증
- ②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대리인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③ 대리인 신분증
- ④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1통 ※공사 양식 이용

## 청약 시 유의사항

-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기재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신청자격, 청약은행, 청약인정회차 및 금액, 월평균소득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순위별 접수마감 이후에는** 본인의 착오, 상담 시 착오안내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정정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청약저축은행명, 청약납입인정회차, 청약납입인정금액, 무주택기간 등을 실제보다 낮게 또는 불리하게 신청한 경우에도 **형평성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 불가합니다.**
-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만 모집세대수의 상위 150%~200%내외에서 서류심사대상자를 결정하며, 제출서류와 신청 시 입력한 내용[자격요건(무주택여부, 해당신청자격, 월평균소득, 자산(부동산, 자동차),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 납입인정금액), 무주택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유무, 태아 등]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 하위로 기재한 경우 서류심사 시 **순위하락, 신청자격 결격,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주요 숙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배우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li> <li>■ 도로명주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공고문 21~22페이지의 참고</li> <li>-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발급 시 모든 이력사항 확인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 기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기간은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상세내용은 공고문 25페이지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자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은 공고문 23~24페이지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복신청 유의</li> <li>※ 중복신청 시 모든 청약신청 무효처리</li> </ul>	<p>1세대(해당세대전원)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이에 위배되는 신청은 중복신청으로 모든 신청을 무효처리</p> <p>&lt;중복신청 예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터넷신청과 방문신청으로 중복신청</li> <li>②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신청하는 경우</li> <li>③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li> <li>④ 서로 다른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되는 경우 (예) 모친, 자녀1, 자녀2 가 한세대를 구성하면서, 자녀1과 자녀2가 각각 신청을 하는 경우 모친이 중복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됨.</li> <li>⑤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은행</li> <li>■ 청약납입인정회차납입인정금액</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2023.8.11.) 현재 기준</li> <li>※ 주택관리번호 : 2023-00035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혹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방문하여 주택관리번호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li> <li>※ 인정되는 청약납입횟수 및 납입금액은 <b>청약 통장에 기재된 금액이 아님</b></li> <li>※ <b>통장에 기재된 금액과 발급받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상 횟수, 금액이 다른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 문의.</b>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료를 통보만 받기 때문에 상담이 불가)</li> </ul>

▶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납입인정금액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 납입회차 및 납입금액은 통장에 나타난 회차 및 금액 기준이 아닌 <b>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납입인정회차) 및 금액(납입인정금액) 기준으로 선정</b>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해당 청약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통장 순위확인은 공사에서 일괄 조회하므로 순위확인서 제출은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영업일(2023.8.14.)부터 발급 가능</li> <li>※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li> </ul> </li> <li>- <b>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b>하며, 가입당시 본인의 가입형태 선택에 따라 해당 주택 청약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0회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납입회차 및 납입금액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조회된 납입회차 및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는 1달에 1번 순위발생일에만 인정됩니다.)</li> </ul>
---

- 인정되는 청약납입횟수 및 납입금액은 **청약 통장에 기재된 금액이 아닙니다.** 인정되는 횟수 및 금액은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주택관리번호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통장에 기재된 금액과 발급받은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상 횟수, 금액이 다른 경우 문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자료를 통보만 받기 때문에 상담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2023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관리번호 : 2023-000357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일반공공용) →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인터넷 청약안내

**“인터넷 청약,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마감시간 내)”**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도로명주소로만 청약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중 1가지를 구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까지 공동인증서를 발급(개인용 공동인증서)하셔야 합니다.
- 본 청약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가 안되시는 분께서는 네이버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인증서를 통한 실명확인이 안되시는 분께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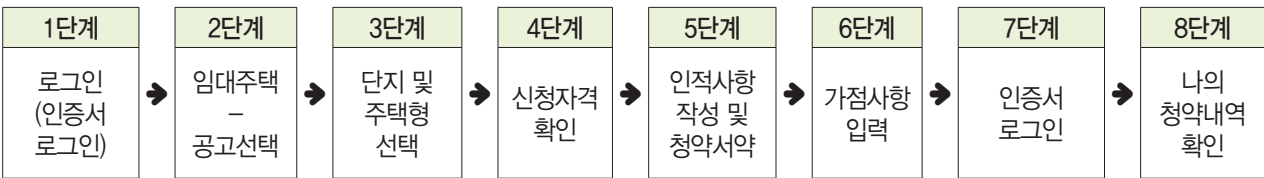
○ 인터넷 신청기간

- 1순위: 2023. 8. 21.(월) 10:00 ~ 2023. 8. 24.(목) 17:00
- 2순위: 2023. 8. 29.(화) 10:00 ~ 17:00
- 3순위: 2023. 8. 30.(수) 10:00 ~ 17:00

- ※ 1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2·3순위는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순위 및 2순위 누적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3순위 청약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순위 및 3순위 신청가능여부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시작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 청약신청은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오니 본인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해당되는 접수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접수일자에 신청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 인터넷청약 가능시간은 해당순위 청약접수 시작일의 오전 10시부터 마감일의 오후 5시까지이므로 해당순위 신청 마감시간(17시)까지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취소 후 재신청은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인터넷 청약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 청약접수일 이전까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중 1가지 발급하여 소지**
- 신청자격, 소득금액,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 납입인정금액, 무주택기간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인터넷·모바일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또는 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가능)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것을 PC로 취소 후 재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 및 재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 **해당순위 청약신청기간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오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신청완료 후 본인이 기입한 내용은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형평성 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 불가)**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신청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며,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려 시스템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청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4 공급주택 및 임대가격

- ※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민 등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인 온수연립주택을 제외하고 금번 공급되는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은 모두 아파트입니다.
-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 및 임대가격(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입 구분 없이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합니다.
- ※ 공고문 상의 임대가격(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단지 내 대표 면적 금액을 표기하였으며, 동일 단지 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 지수가 상이함에 따라 상기 임대가격과 당첨된 임대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문에 기재된 임대조건이 아닌,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 계약면적은 대표 평면유형의 면적을 표기하였으므로 당첨세대에 따라 상기 면적과 당첨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구산그린빌(40㎡이하)

[평형예시 19㎡→6평(9평형), 29㎡→9평(13평형)]

자치구	단지	전용 면적 (㎡)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총 (임대) 세대수	준공 년도
			합계 (A+B)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합계 (천원)	계약금 (계약시) (천원)	잔금 (입주시) (천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합계		18	4	14										
은평구	구산 그린빌	19	15	4	11	2,680	536	2,144	35,500	19.4	9,147	13,842	42,389	153	2009
		29	3	0	3	3,970	794	3,176	52,500	29.55	12,993	21,085	63,628		

### 일반주택(60㎡ 이하)

[평형예시 24㎡→7평(11평형), 29㎡→9평(13평형), 33㎡→10평(15평형), 39㎡→12평(17평형), 49㎡→15평(21평형), 59㎡→18평(24평형)]

- 노원구의 공릉2-6단지 전용면적 33B 및 39B는 원룸형 주택입니다.
- 노원구의 온수연립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인 점을 참고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의 흑석청호는 승강기가 미설치된 단지입니다.

자치구	단지	전용 면적 (㎡)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총 (임대) 세대수	준공 년도
			합계 (A+B)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합계 (천원)	계약금 (계약시) (천원)	잔금 (입주시) (천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합계		1,095	181	914										
강남구	수서1단지 SH빌	33	12	4	8	7,300	1,460	5,840	114,300	33.93	16.36	0	50.29	1,230	1992



자치구	단지	전용 면적 (㎡)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총 (임대) 세대수	준공 년도
			합계 (A+B)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합계 (천원)	계약금 (계약시) (천원)	잔금 (입주시) (천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강서구	가양 8단지	34	13	0	13	7,160	1,432	5,728	113,400	34.44	15.47	0	49.91	1,110	1992
		39	23	1	22	8,090	1,618	6,472	128,400	39.6	16.82	0	56.42		
		49	11	2	9	10,190	2,038	8,152	161,500	49.5	21.43	0	70.93		
	가양 9단지	34	15	2	13	7,110	1,422	5,688	112,900	34.44	15.192	0	49.632	914	1992
		39	13	0	13	8,200	1,640	6,560	130,200	39.6	17.468	0	57.068		
		49	6	0	6	10,230	2,046	8,184	162,300	49.5	21.836	0	71.336		
	방화6단지	24	44	14	30	5,370	1,074	4,296	77,400	24.05	11.35	1.82	37.22	596	1994
		39	8	1	7	8,880	1,776	7,104	127,800	39.6	18.688	2.996	61.284		
	방화9단지	39	17	3	14	9,100	1,820	7,280	118,600	39.87	18.014	0	57.884	250	1995
관악구	봉천신봉	35	4	0	4	11,410	2,282	9,128	132,900	35.24	14.571	6.953	56.764	150	1999
	봉천인현	35	9	0	9	12,470	2,494	9,976	137,700	35.24	15.522	9.398	60.16	117	1998
	신림초원	33	2	0	2	11,270	2,254	9,016	171,200	33.29	14.421	9.305	57.016	63	1999
금천구	시흥목련	29	13	3	10	11,630	2,326	9,304	116,100	29.72	12.773	2.737	45.23	105	1996
노원구	공릉 2-6단지	33	9	0	9	11,360	2,272	9,088	160,700	33.18	12.43	8.38	53.99	691	1999
		33B	19	2	17	11,360	2,272	9,088	160,700	33.18	12.43	8.38	53.99		
		39	20	3	17	13,620	2,724	10,896	193,000	39.84	14.92	10.06	64.82		
		39B	1	0	1	13,620	2,724	10,896	193,000	39.84	14.92	10.06	64.82		
	상계은빛 3단지	33	25	0	25	10,730	2,146	8,584	121,200	33.87	14.243	7.855	55.968	900	1998
		39	26	0	26	12,630	2,526	10,104	142,500	39.84	16.754	9.239	65.833		
	온수 연립주택	57	1	1	0	22,050	4,410	17,640	271,800	57.06	8.217	0	65.277	15	2002
	월계사슴 2단지	24	56	25	31	5,650	1,130	4,520	77,100	24.12	12.56	0	36.68	775	1995
		39	5	0	5	9,310	1,862	7,448	126,800	39.6	20.621	0	60.221		
		49	3	0	3	11,640	2,328	9,312	158,700	49.5	25.777	0	75.277		
	월계청백 1단지	34	39	9	30	9,750	1,950	7,800	118,200	34.44	15.179	6.504	56.123	1,147	1998
39		22	7	15	11,280	2,256	9,024	136,900	39.84	17.56	7.523	64.923			
도봉구	도봉서광	24	9	4	5	8,490	1,698	6,792	146,800	24.91	13.912	7.809	46.631	45	1999
	도봉서원	24	100	40	60	6,640	1,328	5,312	87,800	24.05	12.734	1.044	37.828	734	1996
동작구	신대방	33	1	0	1	9,430	1,886	7,544	119,400	33.2	14.93	0	48.13	48	1995
	흑석청호	33	17	7	10	12,010	2,402	9,608	122,400	33.84	12.562	1.876	48.278	170	1997
마포구	상암월드컵 1단지	39	23	1	22	18,130	3,626	14,504	264,300	39.66	15.48	19.35	74.49	820	2003
		49	16	0	16	21,870	4,374	17,496	301,600	49.93	19.48	24.36	93.77		
	염리상록	27	24	2	22	10,160	2,032	8,128	112,200	27.47	14.026	1.296	42.792	178	1997
송파구	거여3	39	46	3	43	13,590	2,718	10,872	214,000	39.936	12.33	21.027	73.293	598	2000
		59	33	13	20	19,260	3,852	15,408	262,700	59.673	18.437	31.404	109.514		
	거여6단지	39	54	10	44	11,480	2,296	9,184	142,000	39.15	14.61	16.77	70.53	660	1997
	마천대성	33	2	1	1	9,200	1,840	7,360	115,300	33.2	13.218	0	46.418	25	1995
양천구	신정양천	33	108	4	104	8,670	1,734	6,936	109,800	33.62	16.622	3.295	53.537	2,998	1995
		39	61	1	60	10,150	2,030	8,120	128,600	39.36	19.46	3.858	62.678		
	신정푸른 마을1단지	39	16	1	15	13,200	2,640	10,560	203,400	39.08	12.593	21.551	73.224	500	2001
49	41	7	34	15,960	3,192	12,768	232,000	49.16	15.842	27.11	92.112				

자치구	단지	전용 면적 (㎡)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총 (임대) 세대수	준공 년도
			합계 (A+B)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합계 (천원)	계약금 (계약시) (천원)	잔금 (입주시) (천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양천구	신정학 마을2	39	14	0	14	14,600	2,920	11,680	219,700	39.95	13.03	29.79	82.77	510	2000
		49	18	0	18	17,520	3,504	14,016	250,400	49.99	16.3	37.28	103.57		
	신티리 2단지	32	30	3	27	10,010	2,002	8,008	125,400	32.76	12.537	17.126	62.423	698	2000
		39	23	5	18	12,120	2,424	9,696	151,800	39.6	15.155	20.702	75.457		
영등 포구	당산 SH VILLE	59	3	1	2	33,900	6,780	27,120	374,500	59.87	24.07	11.03	94.97	195	2005
	신기목련	33	4	0	4	12,350	2,470	9,880	172,900	33.88	15.96	4.05	53.89	105	1999
	양평상록수	27	4	0	4	9,330	1,866	7,464	100,000	27.99	8.821	2.875	39.686	70	1999
중랑구	신내 10단지	30	2	0	2	8,150	1,630	6,520	91,000	30.4	14.777	0.373	45.55	526	1996
		39	22	1	21	10,620	2,124	8,496	118,400	39.585	19.244	0.486	59.315		
	신내 9단지대	39	8	0	8	10,520	2,104	8,416	117,700	39.84	18.998	0	58.838	335	1996

### 일반주택(60㎡ 초과)

[평형예시 84㎡→25평(35평형)]

자치구	단지	전용 면적 (㎡)	모집세대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총 (임대) 세대수	준공 년도
			합계 (A+B)	금회 공급할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합계 (천원)	계약금 (계약시) (천원)	잔금 (입주시) (천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합 계		29	12	17										
영등 포구	당산 SH VILLE	84	29	12	17	49,090	9,818	39,272	628,400	84.89	32.78	15.64	133.31	195	2005

### 임대금액 전환안내

▶ 상호전환의 종류

상호전환 종류	효과	전환금액 제한	전환이율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기준임대료의 60%까지 전환가능	6.7%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기준보증금의 60%까지 전환가능	2.5%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나, 계산식에 의해 100만원 단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시 월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 이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전환시 임대금액(예시)

※ 아래 전환 임대가격은 단지별 대표면적 금액으로 총별·계약면적별로 실제 당첨된 동호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구	단지	전용 면적 (㎡)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강남구	수서1단지SH빌	33	7,300	114,300	(+)	19,580	45,700
					(-)	2,920	123,400
강서구	가양8단지	34	7,160	113,400	(+)	19,350	45,300
					(-)	2,860	122,300
		39	8,090	128,400	(+)	21,890	51,300
					(-)	3,230	138,500
		49	10,190	161,500	(+)	27,540	64,600
					(-)	4,070	174,200
	가양9단지	34	7,110	112,900	(+)	19,250	45,100
					(-)	2,840	121,700
		39	8,200	130,200	(+)	22,200	52,000
					(-)	3,280	140,400
		49	10,230	162,300	(+)	27,670	64,900
					(-)	4,090	175,000
방화6단지	24	5,370	77,400	(+)	13,690	30,900	
				(-)	2,140	84,100	
	39	8,880	127,800	(+)	22,610	51,100	
				(-)	3,550	138,900	
방화9단지	39	9,100	118,600	(+)	21,850	47,400	
				(-)	3,640	129,900	
관악구	봉천신봉	35	11,410	132,900	(+)	25,700	53,100
					(-)	4,560	147,100
	봉천인현	35	12,470	137,700	(+)	27,280	55,000
					(-)	4,980	153,300
	신림초원	33	11,270	171,200	(+)	29,680	68,400
					(-)	4,500	185,300
금천구	시흥목련	29	11,630	116,100	(+)	24,110	46,400
					(-)	4,650	130,600
노원구	공릉2-6단지	33	11,360	160,700	(+)	28,640	64,200
					(-)	4,540	174,900
		33B	11,360	160,700	(+)	28,640	64,200
					(-)	4,540	174,900
		39	13,620	193,000	(+)	34,360	77,200
					(-)	5,440	210,000
		39B	13,620	193,000	(+)	34,360	77,200
					(-)	5,440	210,000

자치구	단지	전용 면적 (㎡)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노원구	상계은빛3단지	33	10,730	121,200	(+)	23,760	48,400
					(-)	4,290	134,600
		39	12,630	142,500	(+)	27,940	57,000
					(-)	5,050	158,200
	운수연립주택	57	22,050	271,800	(+)	51,260	108,700
					(-)	8,820	299,300
	월계사슴2단지	24	5,650	77,100	(+)	13,940	30,800
					(-)	2,260	84,100
		39	9,310	126,800	(+)	22,930	50,700
					(-)	3,720	138,400
	49	11,640	158,700	(+)	28,700	63,400	
				(-)	4,650	173,200	
월계청백1단지	34	9,750	118,200	(+)	22,460	47,200	
				(-)	3,900	130,300	
	39	11,280	136,900	(+)	26,000	54,700	
				(-)	4,510	151,000	
도봉구	도봉서광	24	8,490	146,800	(+)	24,260	58,700
					(-)	3,390	157,400
	도봉서원	24	6,640	87,800	(+)	16,070	35,100
					(-)	2,650	96,100
동작구	신대방	33	9,430	119,400	(+)	22,270	47,700
					(-)	3,770	131,100
	흑석청호	33	12,010	122,400	(+)	25,170	48,900
					(-)	4,800	137,400
마포구	상암월드컵1단지	39	18,130	264,300	(+)	46,530	105,700
					(-)	7,250	286,900
	49	21,870	301,600	(+)	54,280	120,600	
				(-)	8,740	328,900	
	염리상록	27	10,160	112,200	(+)	22,230	44,800
(-)					4,060	124,900	
송파구	거여3	39	13,590	214,000	(+)	36,580	85,600
					(-)	5,430	231,000
	59	19,260	262,700	(+)	47,500	105,000	
				(-)	7,700	286,700	
	거여6단지	39	11,480	142,000	(+)	26,730	56,800
					(-)	4,590	156,300
	마천대성	33	9,200	115,300	(+)	21,590	46,100
(-)					3,680	126,800	

자치구	단지	전용 면적 (㎡)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양천구	신정양천	33	8,670	109,800	(+)	20,470	43,900
					(-)	3,460	120,600
		39	10,150	128,600	(+)	23,970	51,400
					(-)	4,060	141,200
	신정푸른마을1단지	39	13,200	203,400	(+)	35,060	81,300
					(-)	5,280	219,900
		49	15,960	232,000	(+)	40,890	92,800
					(-)	6,380	251,900
	신정학마을2	39	14,600	219,700	(+)	38,220	87,800
					(-)	5,840	237,900
		49	17,520	250,400	(+)	44,430	100,100
					(-)	7,000	272,300
신트리2단지	32	10,010	125,400	(+)	23,490	50,100	
				(-)	4,000	137,900	
	39	12,120	151,800	(+)	28,430	60,700	
				(-)	4,840	166,900	
영등포구	당산 SH VILLE	59	33,900	374,500	(+)	74,140	149,800
					(-)	13,560	416,800
		84	49,090	628,400	(+)	116,630	251,300
					(-)	19,630	689,700
	신기목련	33	12,350	172,900	(+)	30,940	69,100
					(-)	4,940	188,300
양평상록수	27	9,330	100,000	(+)	20,070	40,000	
				(-)	3,730	111,600	
은평구	구산그린빌	19	2,680	35,500	(+)	6,490	14,200
					(-)	1,070	38,800
		29	3,970	52,500	(+)	9,610	21,000
					(-)	1,580	57,400
중랑구	신내10단지	30	8,150	91,000	(+)	17,920	36,400
					(-)	3,260	101,100
		39	10,620	118,400	(+)	23,350	47,300
					(-)	4,240	131,600
	신내9단지	39	10,520	117,700	(+)	23,180	47,000
					(-)	4,200	130,800

## 05 신청자격

### 자격사항

일반주택 [①,②,③-1 모두 충족]	구산그린빌(전용 40㎡이하) [①,②,③-2 모두 충족]
-------------------------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8.1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유형별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상세내용은 공고문23~24페이지 참고)

■ 소득조건

- 전용 60㎡이하: 가구월평균소득70%이하(1인가구 90%이하, 2인가구 80%이하)

- 전용 60㎡초과: 가구월평균소득120%이하(1인가구 140%이하, 2인가구 130%이하)

■ 자산조건: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③-1.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가입자	③-2 영구임대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

#### ③-1.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가입자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미가입자는 3순위에 해당)

#### ③-2. 영구임대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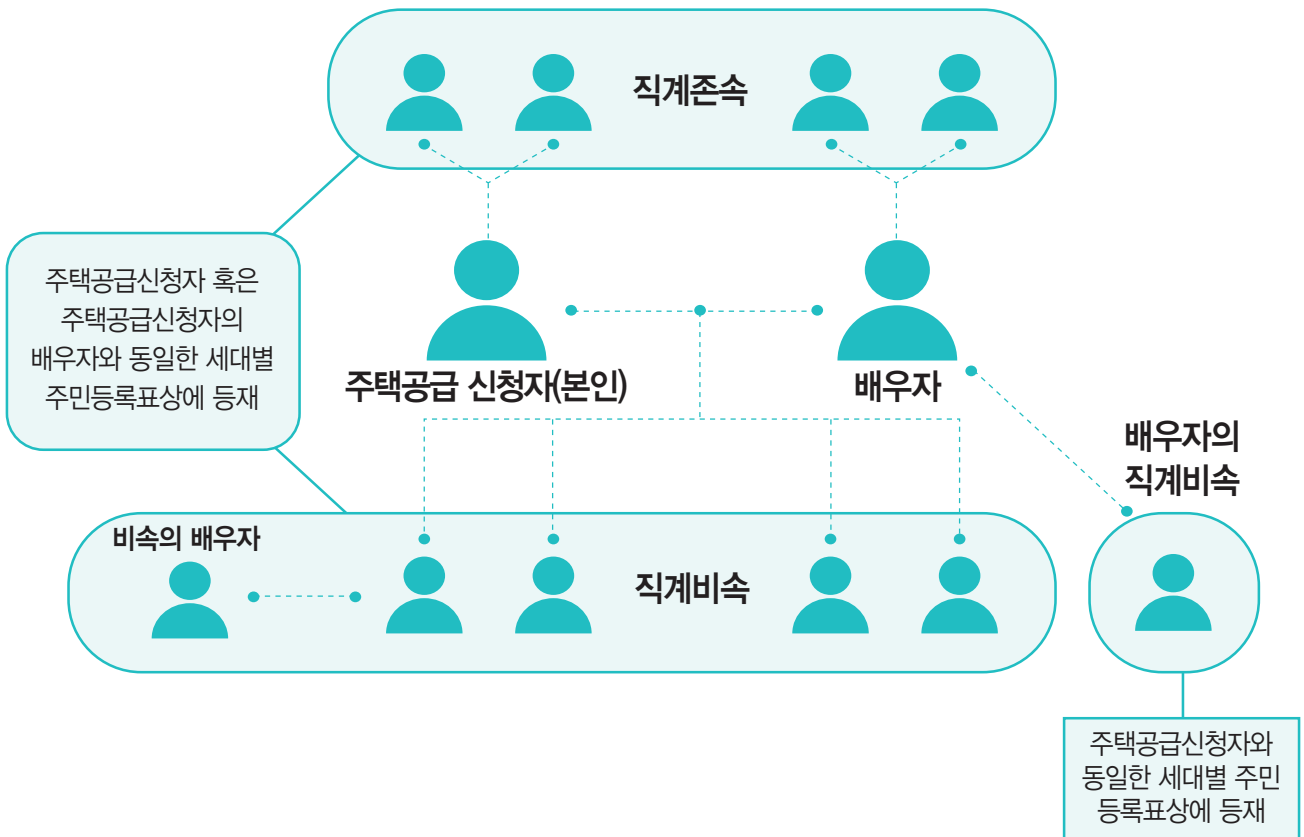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이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이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이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이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음 전원(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단,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관련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역은 청약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기준의 검증,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등의 확인은 무주택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하며, ①인터넷과 방문 등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②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③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④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⑤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하고, ②‘예비 가구구성 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자격사항(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요건, 소득요건, 청약저축통장, 서울시 계속 거주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이하]

- 아래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한 금액임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 가구원 수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1인가구(+20%)	2인가구(+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018,49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4,702,739원 이하	5,335,439원 이하	5,628,344원 이하	6,091,147원 이하
	※ 7인가구(6,553,950원 이하), 8인가구(7,016,753원 이하)						
소득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li> <li>○ 소득기준은 세전금액이며,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아래 12가지 소득을 의미)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li> <li>-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li> </ul> </li> <li>※ 소득항목별 세부 조사항목은 <b>공고문 [별표2] 참고</b></li> </ul>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보장정보시스템</b>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b>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 공시가격</li> <li>- 토지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li> </ul> </li> <li>① 건축물가액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li>②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 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은 포함됨</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보장정보시스템</b>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b>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3,683만원 이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b>비영업용 승용자동차</b>에 한함</li> <li>-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b>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b></li> <li>- <b>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b></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li> <li>-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li> </ul> </li> </ul>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초과]

- 아래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한 금액임
- 해당단지 : 당산 SH VILLE(84㎡)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 가구원 수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0%)	2인가구 (+10%)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4,695,438원 이하	6,506,989원 이하	8,061,838원 이하	9,146,467원 이하	9,648,590원 이하	10,441,967원 이하
		※ 7인가구(11,235,343원 이하), 8인가구(12,028,720원 이하)					
	소득산정 기준	세부내용은 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이하)”의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 : 21,550만원 이하 ※ 부동산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이하)”의 부동산 기준 참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3,683만원 이하 ※ 자동차소유 기준 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60㎡이하)”의 자동차 기준 참조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소득·자산(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 자격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주택소유, 무주택기간, 소득기준 초과, 부동산 초과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06 입주자선정방법

※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제3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무주택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하며,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구산그린빌(전용 40㎡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충족자에 한하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전산추첨

### 전용면적 40㎡이하인 일반주택

#### ▶ 1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①②③항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항별로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

#### ▶ 2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①②③항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항별로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

#### ▶ 3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추첨

### 전용면적 40㎡초과인 일반주택

#### ▶ 1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③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①②③항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항별로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

#### ▶ 2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①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②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③ 청약저축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①②③항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항별로 동일한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

#### ▶ 3순위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법 : 무작위 전산추첨

## 0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모집세대수의 상위 150%~200%내외(세부비율 하단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8.11.)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3. 9. 8.(금) 16:00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서류심사대상자” 조회(1600-3456) ※ 당첨자로 조회할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음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및 제출서류 관련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예정

###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3. 9. 11.(월) ~ 9. 20.(수)

-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연락 없이 탈락되므로 서류심사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심사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3. 9. 20.(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심사실

###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공개재공급 및 예비입주자
  - 기본기준 : 모집세대수의 150%내외
  - 모집세대수가 10호 이하인 경우 : 모집세대수의 200%내외
  - ※ 커트라인 내에 동점자인 경우 전원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 ▶ 심사서류 제출안내

- 모든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8.11.)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기관 발급 과정에서 수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 및 조회자료(사회보장시스템·국토부)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3.8.11.)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① 공통서류(필수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의 이름으로 서명</li> <li>- 구성원의 별거,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마지막 페이지 양식 활용</li> <li>- 구산그린빌(40㎡이하) 신청자격 중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액 이하인 사람”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b>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동의(서명)를 받아 제출</b></li> </ul> </li> <li>• (동의방법) 대상자 전원 성명을 정자로 작성(사인, 도장 불가)</li> <li>• 상기 구성원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됩니다.</li> </ul>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li> </ul>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b>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li> <li>※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함께 제출 (발급방법 동일)</li> </ul>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증명서만 인정,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부 공개)</li> </ul>	

② 해당자만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 원본에 한하며, <u>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u>는 제출 불가</li> <li>•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집계 등 신청서 작성 시 임신여부 선택 및 태아수를 기입한 경우 제출</li> </ul>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산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li> </ul>	•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홈페이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b>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b>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기재된 신청자의 <b>주민등록표등본 제출</b></li> </ul>	
예비가구 구성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 예정인 신청자</li> </ul>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구산그린빌(40㎡이하) 신청자만 제출

영구임대 입주자격 충족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 증명서	• 국가보훈처
③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⑥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 행정복지센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 행정복지센터
⑧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추천서(자치구 확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해당구청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확인서류제출 기간 이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 충족여부확인을 위하여 자산소명 기간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08 동호추첨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전용면적)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4. 공급주택 및 임대가격**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이때 예비자 공급은 상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내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약 2개월 주기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5. 1. 10.(금)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유효한 예비자가 아닙니다.)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 및 도시계획철거민 등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24. 1. 11.(목) 16:00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당첨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당첨자 조회 (1600-3456)
    - ※ ARS조회 시 반드시 ‘당첨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조회 시 조회되지 않음)
    -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또는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입주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통과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등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로서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된 후 관련 심사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의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인적사항 변경(개명), 인터넷 청약신청 시 부정확한 주소 기재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연락처 변경 여부 및 정확한 주소를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알려주시기 바람** 미통보에 대한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09 계약일정 및 구비서류

**계약방법** 온라인전자계약 및 방문계약

- ※ 계약 전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첨은 무효처리 합니다.(계약불가)
- ※ 온수연립주택의 경우 방문계약만 가능합니다.
- ※ 방문계약의 정확한 장소 및 방법은 계약안내문 발송 시 확정 통보예정입니다.

**계약일시** 2024.1.30.(화) ~ 2024.2.2.(금) 10:00~17:00 (단, 방문계약 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소득·부동산·자동차 등 초과 및 주택소유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명이 완료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자계약 안내** ※ 온수연립주택의 경우 온라인 전자계약이 불가하며 방문계약만 가능합니다.



- 구비사항: 공동인증서 발급 및 소지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①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및 ②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서 구성완료 안내(문자 또는 어플알림), 즉 2번의 알림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공사로 내방하여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방문계약 안내

- 방문계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계약 구비서류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을 대리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2024. 1. 11.)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신분증 안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지참해야함
  -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운전면허증에 한함

구분	구비서류
계약자 본인 내방 시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 (계약자 본인 내방 시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서류: 위임장(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 내방 시 (직계존비속, 배우자 포함)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대리인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대리인 신분증 ④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1통 ※공사 양식 이용

※ 만일 계약금을 납부했다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 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및 계약 취소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임신 중인 자녀(입양포함)를 세대원으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입주자포함)된 자는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
- 당첨자 발표이전 이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 청약저축가입 유지 등의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입주 시까지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당첨자(예비입주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무주택기간, 청약납입인정회차(인정금액)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예비(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당첨자는 예비입주자라도 미공급)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계약 혹은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방문신청과 인터넷청약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관계법령 위반 등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10** 입주지정 기간 : 2024. 2. 13.(화) ~ 2024. 4. 15.(월)



## 11 임대주택 위치 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이미 공급한 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남은 공간으로서 **현장여건상 견본 주택을 운영하지 않으니** 하단의 “임대주택 단지 정보 검색방법”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단지정보 검색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임대정보 → SH주택정보(새창)

자치구	단지명	단지 주소
강남구	수서1단지SH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
강서구	가양8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76
	가양9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24
	방화6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23길 25
	방화9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1길 57
관악구	봉천신봉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6나길 18
	봉천인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15길 66
	신림초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5길 40
금천구	시흥목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3길 26
노원구	공릉2-6단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길 81
	상계은빛3단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50길 17
	온수연립주택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9나길 27
	월계사슴2단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55길 16
	월계청백1단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89
도봉구	도봉서광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70
	도봉서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84-20
동작구	신대방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83
	흑석청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2길 29
마포구	상암월드컵1단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7길 8
	염리상록	서울특별시 마포구 송문길 106
송파구	거여3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2길 44
	거여6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산로2길 38
	마천대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34길 8
양천구	신정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길 57
	신정푸른마을1단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7길 70
	신정학마을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4길 1
	신트리2단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75
영등포구	당산 SH VILL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83
	신기목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 34
	양평상록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7
은평구	구산그린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56
종량구	신내10단지	서울특별시 종량구 신내로 115
	신내9단지	서울특별시 종량구 신내로 127



## 12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p><b>임대대상 및 조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과 그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li> <li>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임대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갱신 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li> <li>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li> <li>구산그린빌의 경우에도 상기 갱신 할증비율은 동일하며, 기준소득을 도시근로자 월 소득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li> </ul> <table border="1" data-bbox="316 929 1417 1272">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1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20%</td> <td>140%</td> </tr> <tr> <td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td> <td colspan="2">할증비율</td> </tr> <tr> <td colspan="2">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ul>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p><b>공급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신청자격 및 순위에 따른 신청가능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며, 해당순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li> </ul>																			
<p><b>신청자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방문 등으로 중복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동일 무주택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할 경우, 서로 다른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li> <li>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①신청서 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예비 가구구성 확인서'에 분리예정 세대를 표시하여 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와의 분리세대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li> </ul>																			
<p><b>신청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하며, <b>당첨 판정 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b>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b>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b>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신청서 착오작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b>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b>해야 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제출하는 서류는 <b>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b>이어야 합니다.</li> <li>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p><b>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미계약, 미신청 동호수 발생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li> <li>• <b>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등으로 서류제출 안내문,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미리 우리공사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변경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b>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의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중복 입주할 경우 전부 계약해지 및 퇴거하여야 합니다.</li> <li>• 소명기한이 계약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약금은 납부하되 계약은 소명완료 후 체결할 수 있습니다.</li> </ul>
<p><b>임대금액 전환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li>•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비율은 6.7%입니다.</li> <li>•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현재 전환 비율은 2.5%입니다.</li> <li>• 향후 전환 비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되는 비율을 적용하여 상호전환 시 임대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li> <li>•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li> </ul>
<p><b>당첨 및 계약 취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가구원수,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 소득입증,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됩니다.</b>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기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b>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b></li> <li>•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b>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b>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li> <li>•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시까지 자격사항(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 소득요건 충족, 청약저축통장, 서울시 계속 거주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b>당첨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b></li> <li>•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b>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b></li> <li>• 당첨자 발표이전에 주택,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b>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b></li> <li>•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로 인정받아 <b>당첨자(예비입주자)가 된 자가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의 경우</b> <b>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b></li> <li>•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서류의 결격·미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b>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b></li> <li>• 추후 월평균소득이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자산(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이 자산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주택소유가 확인되는 경우 <b>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b></li> <li>• 기타 사유로 인하여 <b>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b> <b>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b></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 후에도 전대 확인 시 퇴거 조치함)</li> <li>•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li> <li>•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li> <li>-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3에 의거 임대차 계약 해제, 해지, 재계약 거절될 수 있으며, 제49조 4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전대 금지, 제49조 8에 의거 4년 이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li> <li>•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잔여공기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기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li> <li>•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li> <li>•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li> <li>•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 및 결정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취소(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관할센터에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입니다.</li> <li>• 본 공고문의 청약저축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li> <li>•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따릅니다.</li> <li>• 이번 공고 내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없어 휠체어사용세대의 경우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및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13 단지 관련 안내사항

### - 단지별 유의 사항(공통) -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 및 계약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에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입 구분없이 전용면적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동호배정이 되며, 동일 단지내 타입별 계약면적 및 층별지수가 상이함에 따라 같은 전용면적 내에서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노인정·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상기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공급 후 남은 잔여세대로 기 완공된 주택이며 계약 후 입주지정일내 잔금 납부 후 입주가능함.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장판·벽지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저층배정 등의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능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도로·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임대주택 위치는 공고문상의 주소를 참조하기 바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임.
-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확인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임대정보 → SH주택정보(새창)
-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등 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준공된 지 오래된 단지는 자료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관할 센터에 문의해야 함.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 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난방)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경로당,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기계, 전기 시설관련 급배기구, 지하주차장 환기탑(DRY AREA),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주차관제용 출차주의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매연, 진동, 불빛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승강기 인접세대는 승강기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으로 불편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부미관이 다소 저해될 수 있음.
- 동별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세탁기 설치위치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 상의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공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히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가구의 김치냉장고, 냉장고 및 에어컨 실외기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 함.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함.
- 침실 및 거실 바닥 마감재로 강화마루가 시공되는 세대의 경우, 강화마루 들뜸 및 벌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현가식 시공 특성상 자재의 신축 팽창에 따른 현상으로 하자사항으로 볼 수 없음.
- 평형별 및 세대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층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해당시설 및 주변 동에 소음 및 열기가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복도형 아파트 복도면 상부에 소화시설(스프링쿨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의 문제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음.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레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 차량통행로 최소 유효 높이에 따라 계획되어 일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 및 주차가 불가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함.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전자파 위해성 민원으로 설치되지 않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 가능)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1층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및 조명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공용면적이 다소 넓거나,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등으로 관리비 등이 다소 높을 수 있음.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온수연립주택의 경우 단지 서측에 동부간선도로(20m)가 바로 인접하여 도로교통 소음, 진동이 있는 지역이며 1층은 필로티층으로 주차장 용도로 쓰임. 계단식 구조이며 개별난방방식임. 각 세대 전, 후면 발코니에 샷시가 설치되어 있어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시켜서 결로를 예방해야 함.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음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당해 지구 단지를 방문 또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시어 소음·조망·일조·도로·환경·저해·주변 혐오시설 유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23년 8월 11일

## 서울주택도시공사

## [별표1]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 **검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해당세대)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와 무주택기간을 확인
- **검색범위**
  1.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2.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 매수한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
  - ※ **준공후 등기처리 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7.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인정 불가하며, **당시 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소명이 불가합니다.**)
  -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9. 매매의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별표2]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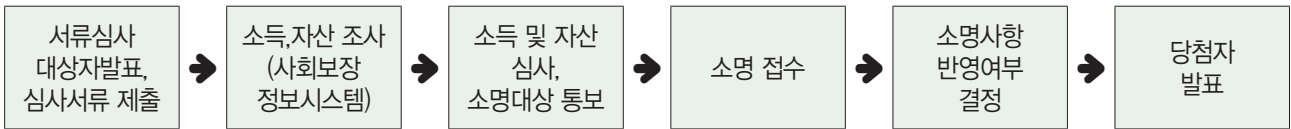
■ 소득·자산 산정방법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부 농지대장 -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자산	일반 자산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 ※ 무주택구성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 소득·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고시 또는 지침에 의합니다.
- ※ 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기간 내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됩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자료(건강보험 보수월액)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직장보험료조회 → 보수월액 확인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1개 사업장으로 반영(높은 금액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2023년 공공·주거환경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서명은 이름을 정자로 자필 작성)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필수, 구산그린빌(40m2이하) 신청자격 중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액 이하인 사람" 신청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도 필수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 이름으로 서명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보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지침서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국가공공자등 해당여부 - 외국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 외국인등록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준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 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보장급여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한국부동산원, (관할)지방보훈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정사업본부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한국부동산원	청약인정확차 및 기사용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할)지방보훈청	사회취약계층 해당여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대상 및 임대주택 중보 입주여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청사항, 계약내역
나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대상자 확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등 우편발송	성명, 주소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경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7. [선택]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MEM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http://www.i-sh.co.kr)

**콜센터 1600-3456**